

지정기탁의뢰금관리규정

제정 2015. 3.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의 기부금 지정기탁의뢰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이란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전 등 재산적 가액을 말한다.
2.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지식, 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정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대한체육회(특별시, 광역시, 도체육회 및 가맹단체 포함)에 운동선수 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3. “지정기탁의뢰금”이란 협회 산하 연맹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법인(또는 개인)에게 협회가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기부금을 수령한 후 연맹에 전달하도록 의뢰 받은 금액을 말한다.
4. “산하 연맹”이란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 한국대학골프연맹, 한국실업(미드아마)골프연맹을 통칭(이하 “연맹”)하여 말한다.

제3조(사용계획서의 사전제출) 지정기탁의뢰금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당 협회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이때 연도별로 사전에 반영되지 아니한 기탁의뢰금은 별도의 특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수령 및 전달방법)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부금의 수령은 기부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법인(또는 개인)으로부터 협회의 지정된 계좌로 의뢰금을 수령하고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전달한다.
2. 지정기탁의뢰금은 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부금 출연자가 지정한 연맹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다.

제5조(사용범위) 지정기탁의뢰금을 수령한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1. 선수훈련비
2. 국내대회 및 국제경기의 개최비, 참가비
3. 선수용 물품지원비 및 각종 장비 구입비
4. 기타 선수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단, 각 연맹은 최소 100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아마추어 자격 규칙에 어긋나는 사업비 집행은 기부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정산 및 사후관리) 연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산 및 결과보고를 해야 한다.

1. 연맹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정기탁 의뢰금을 사용한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 양식(별지 제1호)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각종 증빙서를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협회는 연맹이 집행한 내용이 허위정산이거나 부정한 내용이 관찰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연맹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협회는 지정기탁의뢰금 반환청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는 연맹에 대하여 지정기탁의뢰금의 교부를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용도 외 사용금지) 각 연맹은 관계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규정 제6조에 정한 범위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2015. 3.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지원금 정산서 총괄표

1. 총괄내역

(단위:원)

단 위 사 업 명	기 간	장 소	금 액	비 고
계				

* 단위사업명은 대회명, 훈련비 등 실제 집행하는 사업(행사)명을 기재

* 일정 순으로 작성하되 연간사업은 마지막에 작성

정 산 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지원금	자부담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지원금	자부담	계

2. 집행액 세부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명	집행내역	집행액		
		지원금	자부담	계
(예시) 대회명, 훈련비 등 사업명	숙박비	900,000	0	900,000
	식 대	700,000	0	700,000
	트로피 ○개 X ○원	500,000	200,000	500,000
	소 계	2,100,000	200,000	2,100,000
·	·	·	·	·
·	소 계	·	·	·
합 계		2,100,000	200,000	2,300,000

- * 집행내역은 구입물품의 수량 및 단가도 함께 작성
- * 집행액은 증빙 자료 제출 금액 기준으로 작성
- * 첨부 :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 견적서 · 입금증, 시·도 및 연맹 카드전표)

계좌이체 내역서

영수증 및 기타 증빙자료

대 회 명	
일 자	
참 가 자	
사용금액	
사용내용	

법인카드 내역서

영수증 및 기타 증빙자료

대 회 명	
일 자	
참 가 자	
사용금액	
사용내용	